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 운영 지침

제정 2018. 09. 20.

제1조(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는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재학생으로 한다.

(단, 신·편입학 첫학기, 유급, 계약학과 학생은 신청 불가)

제2조(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제3조(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본인이 신청한다.

제4조(분할납부 횟수 및 납부일) 분할납부 횟수 및 납부일은 총장이 정한다.

제5조(납부은행) 납부은행은 총장이 정한다.

제6조(기타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0학년도부터 시행한 대학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는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본다.